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1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관계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

- 중복 및 폐지된 규정 삭제
 - 이의신청심의
 -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각종 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신규사항 추가
 - 보안심사
 - 정보공개 심의사항

○ 일부 불부합한 자구수정

- “실·과장” ⇒ “과장”
-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사항”을
⇒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로 함

□ 의안전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 : 별첨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소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소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2항중 “총무과장이 된다”를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7인”을 “5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출장소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장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개정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행정간행물 발간심사
7.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 가.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 나.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
8. 기타 소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중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매주 1회 개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을 “출장소장”으로, “위원회”를 “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1일전”을 “24시간 전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4항”를 “제3항”로 하며, 동조제5항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권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간사는 출장소의 총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과 주무담당 주사로 하여금 간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한다)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소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소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견(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소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당연직위원은 출장소의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출장소장이 위촉한다</p>	<p>③당연직위원은 출장소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장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p>
<p>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p> <p>.....5인.....</p> <p>.....</p> <p>.....</p> <p>⑤.....</p> <p>.....운영할 수</p> <p>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장소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 4. 이의신청 심의 5.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심사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10.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12. 각종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기타 규정된 위원회종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기타 출장소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p>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개정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행정간행물 발간심사 7.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나.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 심의 8. 기타 소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일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생략) ⑦(생략)	제4조(회의) ①..... 매주 1회 개최한다. ②..... 출장소장..... 위원..... ③..... 24시간 전에 ④제3항..... 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제5조(의견의 청취) (생략)	제5조(의견의 청취)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출장소의 총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실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서기를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출장소의 총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과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간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견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제7조(조례규칙등)

출장소 행정처리에 필요한 조례규칙등은 괴산군 자치법규에 의한다. 다만, 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특례조례규칙을 정할 수 있다.